

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 일	
단지 현황	단 지 명 칭				
	주 소				
	①사업계획승인일	년	월	일	세대수
	②사용검사일	년	월	일	(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일 : 년 월 일)
	시행자(분양자)				
	시공사 (일괄도급 시)				
	③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				
입주자 대표회의 (신고인)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년 월 일	
	주소	전화번호:			
하자보수 보증금	받은 금액	일금 원정		받은 날짜 년 월 일	
	사 용 내 역	시설대상	금 액	사용일자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	남은 금액	일금 원정		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(입·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) 사본 1부 2.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1부
------	--

작성방법

- 1. ①은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을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.
- 2.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.
 - 가.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. 다만,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,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,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.
 - 나.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한 공동주택은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 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.
 - 다.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.
- 3. ③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을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-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